

항 공 안 전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 활용이 일상화되면서 취미·레저를 비롯하여 영상 촬영, 시설물 점검, 측량·탐색 등 여러 산업 활동에도 활용되는 등 드론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무인비행장치 제작·운용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손쉽게 조종할 수 있게 되면서 2025년 기준으로 조종자격 취득자는 79만명, 신고 기체는 75천대에 달하는 등 이용 계층이 폭넓어지고 온라인 구매 등 거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을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화재 진화 등 긴급히 공공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할 경우에 비행승인 등 특례를 부여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비행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에서 긴급한 비행이라 보기 어려운 사항까지 규정하고 있어 법률 취지를 감안하여 특례 대상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시 대리인 신고 절차 마련(안 제301조)

초경량비행장치 이용자가 폭넓고 거래 방식도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

나. 무인비행장치의 공공목적 긴급비행 특례 정비(안 제313조의2)

무인비행장치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한 비행 중
법률과 중복되거나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산림 방제·순찰’, ‘산
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을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 검토 요청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13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16호서식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제301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법	-----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을	-----			
받기 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	-----			
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	-----			
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	-----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			
이내를 말한다)까지 별지 제116	-----			
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			
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	-----			
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			
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	-----			
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			
	서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 장치의 긴급비행) ①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무인비행 장치의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긴급비행의 목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으로 한다. 1. ~ 5. (생략) <u>6. 산림 방제(防除)·순찰</u> <u>7.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수송</u> 8. ~ 11. (생략) ② (생략)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 장치의 긴급비행)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8.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